
우리 수출에 대한

**2003년 上半期 輸入規制 動向 및
下半期 展望**

2003. 6.

K O T R A

目 次

| | |
|-------------------------------|----|
| 1. 最近 國際通商環境 | 1 |
| 2. 2003년 上半期 對韓 輸入規制 動向 | 11 |
| 가. 총 괄 / 11 | |
| 나. 국별 동향 / 13 | |
| 다. 최근 對韓 수입규제 특기사항 / 40 | |
| 3. 2003년 하반기 對韓 輸入規制 展望 | 46 |
| 가. 총 괄 / 46 | |
| 나. 주요국별 전망 / 51 | |
| □ 添 附 : 國別/品目別 輸入規制 現況表 | 57 |

1. 最近 國際通商 環境

글로벌화의 진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 글로벌화의 진전, 신흥 공업국들의 등장, 시장개방 확대, 일부 전통 산업의 공급과잉 현상 등으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쟁국간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글로벌화의 급진전에 따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한나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전세계적 파급효과를 가지는데, 2002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철강 세이프가드가 그 단적인 예
 - 신흥 경제국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공업과 기초 중공업 분야는 선진국 경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업대책을 위해서라도 보호주의적 정책을 들고나올 가능성 상존
 - 현재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는 섬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호주의적 성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수출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세계 수출단가 변화 추이>

(단가지수 : 1992=100)

| 연 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단가지수 | 110 | 110 | 103 | 97 | 97 | 98 | 95 | 96 |
| 변화율 | 11.2% | -0.6% | -6.1% | -5.7% | -0.5% | 1.7% | -3.4% | 1.3% |

자료원 : WTO, 주 : 1) 변화율은 전년대비, 2) 수출단가는 상품수출단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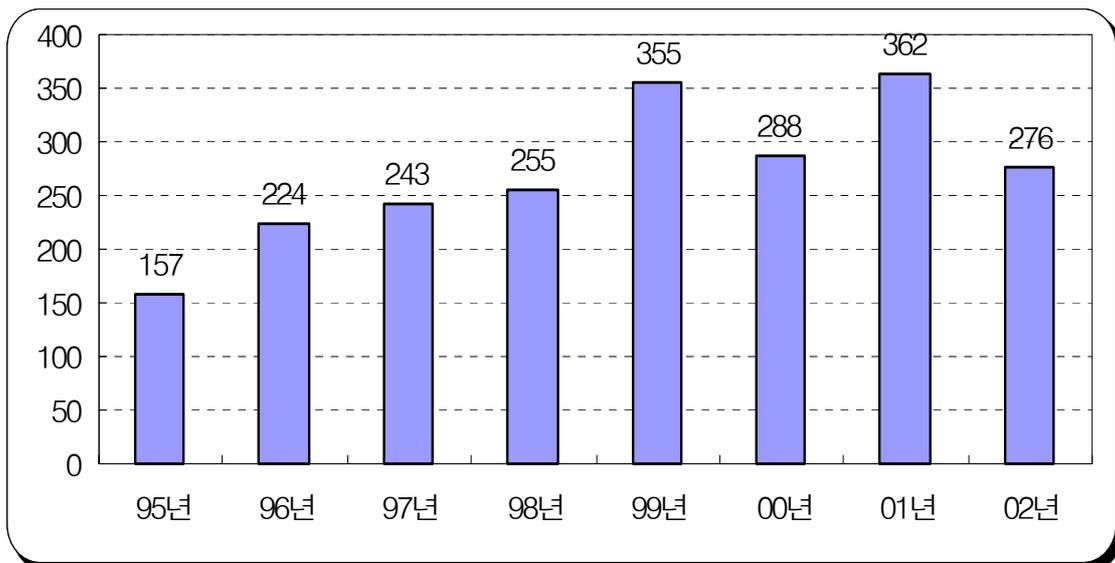
WTO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의 빈번한 활용

□ 글로벌화의 진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로 보호무역주의가 배태될 소지가 많은 토양 속에서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들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의 활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2. 3월에 발동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촉발된 세계적인 철강분쟁, 美-EU의 유전자변형식품(GMO) 분쟁, EU의 바나나 수입 유통체제와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WTO가입 이후 중국의 반덤핑 조치 증가 등이 그 예

□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인 반덤핑 조치(조사개시 기준)는 2002년에 276건을 기록했으며, WTO체제 출범 이후 39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에 의해 총 96개 국가를 대상으로 2,160건이 발동됨

<반덤핑 제소 현황>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반덤핑 조치의 주요 발동국은 인도, 미국, EU 등이며, 주요 피소국은 중국, 한국, 미국 등으로 나타남

<주요 반덤핑 조치 발동국 및 피소국 현황>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합계 | |
|--------|-------|------|------|------|------|------|------|------|-------|-----|
| 세계 전체 | 157 | 224 | 243 | 255 | 355 | 288 | 362 | 276 | 2,160 | |
| 주요 발동국 | 인도 | 6 | 21 | 13 | 27 | 65 | 41 | 79 | 79 | 331 |
| | 미국 | 14 | 22 | 15 | 36 | 47 | 47 | 76 | 35 | 292 |
| | EU | 33 | 25 | 41 | 22 | 65 | 32 | 29 | 20 | 267 |
| | 아르헨티나 | 27 | 22 | 14 | 8 | 24 | 45 | 26 | 14 | 180 |
| | 남아공 | 16 | 33 | 23 | 41 | 16 | 21 | 6 | 4 | 160 |
| | 호주 | 5 | 17 | 42 | 13 | 24 | 15 | 23 | 16 | 155 |
| 주요 피소국 | 중국 | 20 | 43 | 33 | 28 | 41 | 43 | 53 | 47 | 308 |
| | 한국 | 14 | 11 | 15 | 24 | 34 | 22 | 23 | 17 | 160 |
| | 미국 | 12 | 21 | 15 | 15 | 14 | 13 | 15 | 10 | 115 |
| | 대만 | 4 | 9 | 16 | 10 | 22 | 16 | 19 | 13 | 109 |
| | 일본 | 5 | 6 | 12 | 13 | 22 | 9 | 12 | 9 | 88 |
| | 인도 | 3 | 11 | 8 | 12 | 13 | 10 | 12 | 13 | 82 |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2002년도 세계 반덤핑 조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 기초 금속, 플라스틱/고무 등이 주된 규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남

<2002년 주요 품목별 반덤핑 조치 발동 현황>

| 품 목 | 화학제품 | 철강/금속 | 플라스틱/고무 | 축산제품 | 시멘트/유리 | 합 계 |
|-----|-------|-------|---------|------|--------|-------|
| 건 수 | 87 | 86 | 29 | 11 | 10 | 223 |
| 비 중 | 31.5% | 31.2% | 10.5% | 4.0% | 3.6% | 80.8% |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2002년중에는 반덤핑 조사건수가 전년의 362건에 비해 23.8%가 감소하였으나, WTO 창설이후 4번째 높은 수준이며, 1980년도 이후 5번째 높은 수준이므로, 반덤핑은 여전히 활용빈도가 높은 무역 규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남.

<반덤핑 조치 발동 현황>

| | | | | | | | | | | | | |
|----|-----|-----|-----|-----|-----|-----|-----|-----|-----|-----|-----|-----|
| 연도 | 80 | 81 | 82 | 83 | 84 | 85 | 96 | 87 | 88 | 89 | 90 | 91 |
| 건수 | 76 | 64 | 193 | 189 | 153 | 195 | 160 | 125 | 132 | 101 | 152 | 222 |
| 연도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 건수 | 300 | 242 | 215 | 157 | 224 | 243 | 255 | 355 | 288 | 362 | 276 | - |

자료원 :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3", 1995년 이후는 WTO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최근 들어, 반덤핑 조치 주요 발동국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80년대 후반까지 전세계 반덤핑 조치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의 반덤핑 활용 빈도가 꾸준히 감소하여 2002년도에는 이들 국가의 반덤핑 조치는 조사개시 기준으로 총 76건으로 전세계 반덤핑 조치의 27.5%만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개도국들이 최근 들어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덤핑 조치의 선진국/개도국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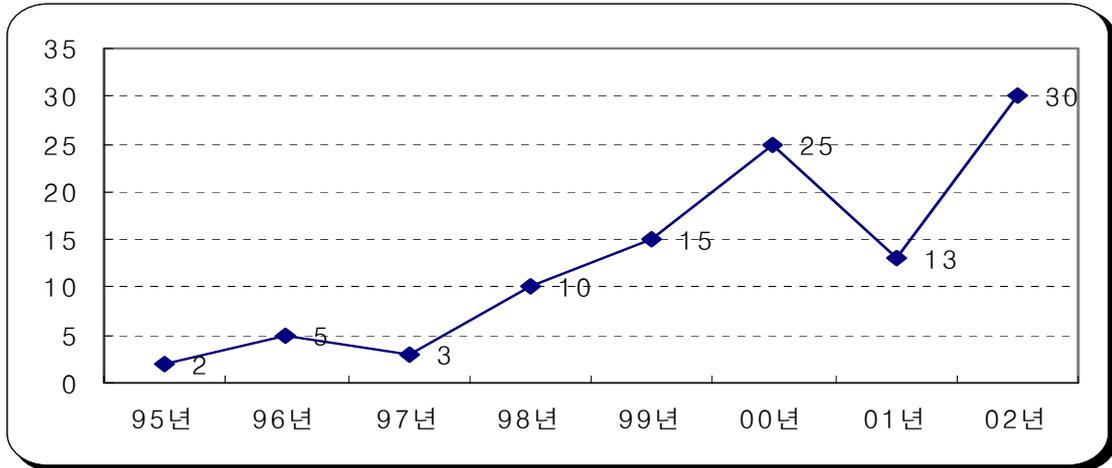
| 구 분 | 80년대 후반 | 1995~1999 | 2000 | 2001 | 2002 |
|-----|---------|-----------|-------|-------|-------|
| 선진국 | 90% 이상 | 38.7% | 39.9% | 42.3% | 27.5% |
| 개도국 | 10% 미만 | 61.3% | 60.1% | 57.7% | 72.5% |

자료원 :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3", 1995년 이후는 WTO

주)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 2002년도에 반덤핑 조치가 전년에 비해 23.8% 감소한 것은 최근 들어 세이프가드 발동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세이프가드 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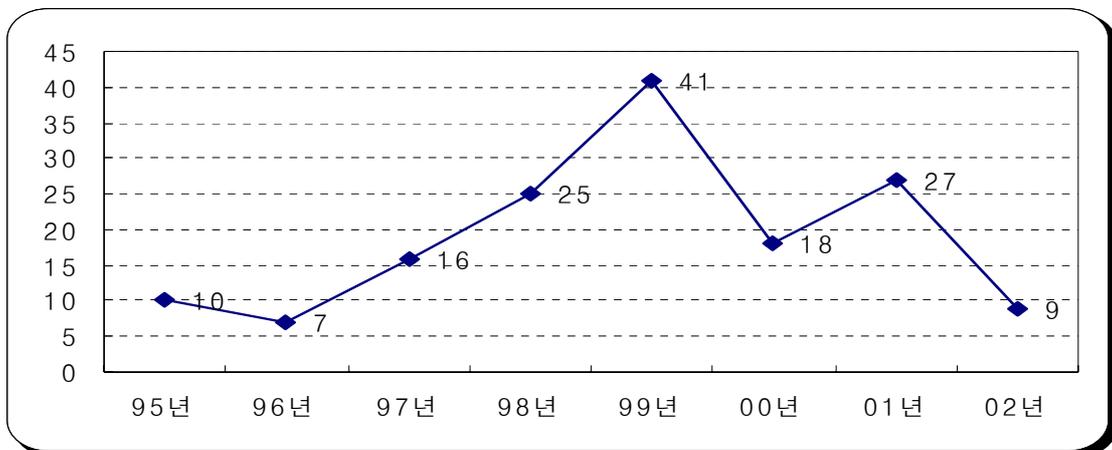
자료원 : Committee on Safeguard, WTO

주)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기준

-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조치와 일종의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반덤핑 조치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는 반덤핑 조치 대신에 세이프가드를 활용하고 있음
 - 이처럼 세이프가드 발동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반덤핑 조치가 특정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수입규제 조치인데 반해, 세이프가드는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수입규제 조치이므로 반덤핑에 비해 피해 규제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임
 - 또한,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비해 용이하다는 것도 세이프가드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임
-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비해 국제 통상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큼

- 반덤핑이나 상계관세가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인데 반해, 세이프가드는 비록 공정한 무역행위일지라도 자국 산업이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므로, 자국산업 보호를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 반덤핑 조치가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조치인데 반해, 세이프가드는 규제하려고 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규제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한 국가에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5~10개국이므로 2002년의 세이프가드 조치 30건(조사개시 기준)은 150~300건의 반덤핑 조치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음¹⁾
- 상계관세 조치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상계관세 제소 추이>



자료원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주) 상계관세 조사개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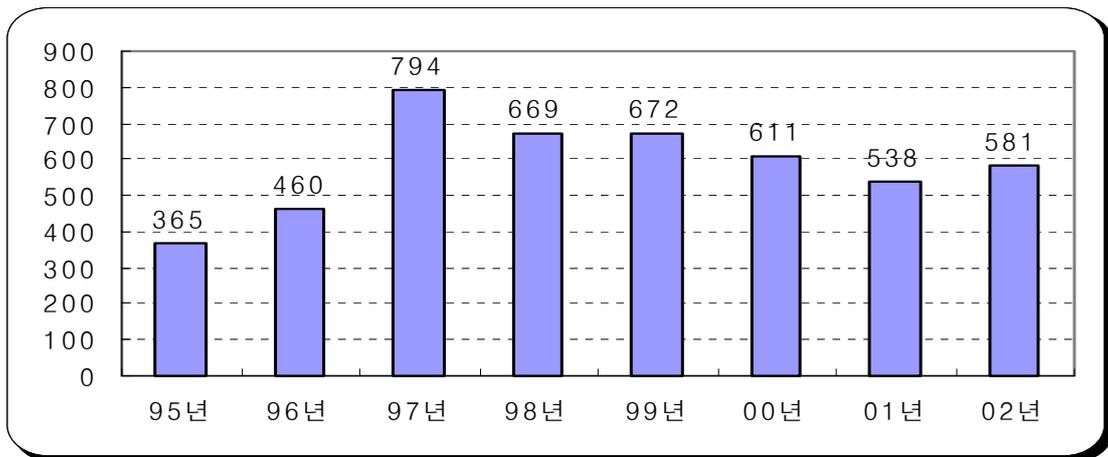
- 상계관세의 비중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첫째,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상계관세 산정방식이 덤핑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임

1) "Global Protection Report 2003", Mayer, Brown, Rowe & Maw에서 인용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도입 증가

-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WTO 출범 이후 다른 전통적인 비관세장벽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위생이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장벽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호무역주의의 한 경향이라 볼 수 있음
- 기술장벽 도입은 WTO체제 출범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 538건, 2002년에 581건이 도입되어, WTO 출범이후 2002년말 기준으로 총 4,666건이 도입되었음

<세계 기술장벽 도입 현황>



자료원 : TBT Committee, WTO

주) TBT 통보건수 기준

- 2002년에 WTO에 통보된 기술장벽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 전체의 4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기술장벽은 현실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개도국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세계 무역의 양대 축인 美-EU의 무역분쟁 심화

-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서 불붙기 시작한 미-EU간 갈등관계가 이라크전을 계기로 양측간 통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
 - 전통적으로 환경과 보건위생을 중시해온 EU의 통상정책 기조와 GDP의 5%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끈질기게 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의 공격적 통상정책이 충돌하면서 양국간 무역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미-EU간 주요 무역분쟁 사례>

| EU측 제기사항 | 미국측 제기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수입제한 ■ 해외판매법인(FSC) 면세법 ■ 수퍼 301조(Omnibus Act) ■ 자동차 안전법규 ■ 구제역 조치 ■ "Buy America"법안 ■ 이라크 복구관련 불공정한 공공구매 입찰 절차 ■ 농수산물 수출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나나 수입제한 ■ 호르몬 쇠고기 수입제한 ■ 전기전자폐기물(WEEE)지침 ■ 화학제품 규제강화 ■ 항공기산업 정부보조금 ■ 유전변형식품(GMO)수입제한 ■ 디지털제품 부가가치세 ■ 가금류 수출제한 ■ 와인 수입제한 |

자료원 : World Report 제85호, 삼성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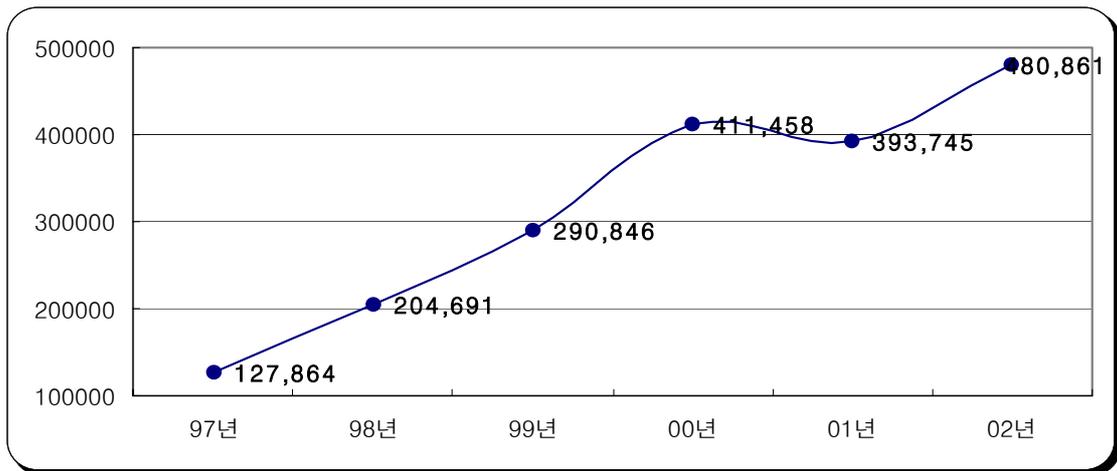
- 최근 미국은 EU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금지조치²⁾에 대항하기 위해 동 문제를 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혀, 이 문제가 미-EU 통상관계에 핫 이슈가 될 전망
 - 이처럼 미-EU 양국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통상현안에 대해 상호협의를 의한 해결보다 보복성 조치에 의존할 경우, 통상마찰이 더욱 심화되어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음

2) EU는 지난 98년부터 GMO가 건강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며, 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미국 농민협회는 이로 인해 연간 3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통상압력 강화

- 대규모의 상품수지 적자로 인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에 4,808억 달러로 GDP의 4.6%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적자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美 상무부가 밝힌 미국의 2003년 1/4분기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사상 최대규모인 1,361억 달러 기록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추이>



자료원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단위 : 백만 US\$

- 이러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시행정부는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경상수지적자 해결을 위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단적인 예로, 1/4분기 경상수지 동향 발표 이후 美 정부 한 관계자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수입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외국의 무역장벽 제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순조롭지 못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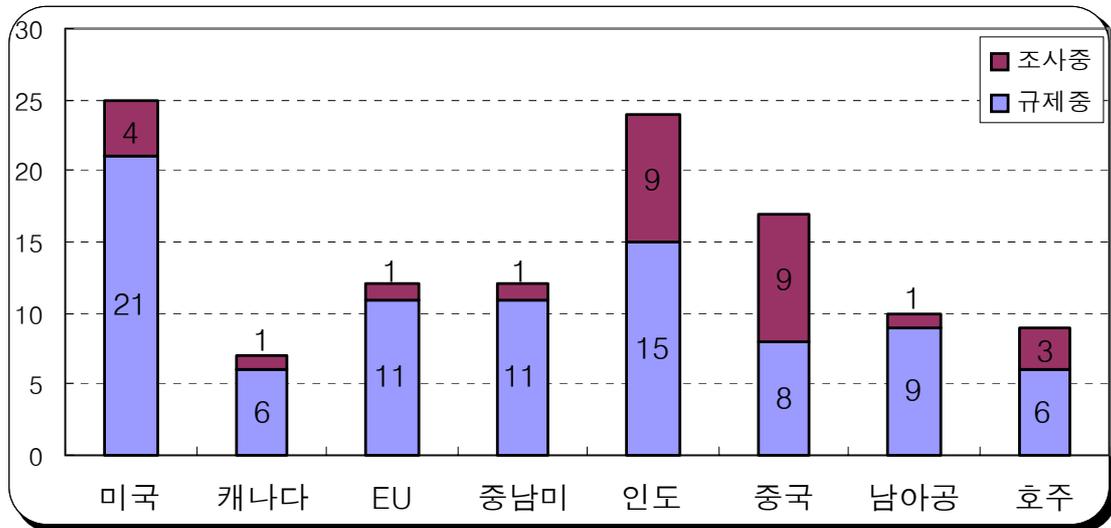
- 2001. 11월 출범한 DDA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계무역의 자유화가 진전되어 보호무역주의 분위기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현저한 입장차이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농산물 협상의 경우,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3월 말로 예정되었던 협상 세부협상원칙(modalities)합의에 실패하였고, 서비스부문도 1차 양허안 제출 마감 시한인 3월말까지 불과 12개국만이 양허안을 제출하는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DDA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이처럼 DD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첫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들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들이 종전과는 달리 국제협상무대에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간 힘 겨루기가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 둘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각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과거 어느 협상 때보다 쉽지 않기 때문임
 - 이번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지지부진한 DDA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협상의제(특히, 농업부문)를 둘러싼 선, 후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DDA 협상에 상당한 차질일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다자간 통상협상이 약화되고 세계 각국이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에 의존하여 다수의 경제블럭을 형성할 경우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 경제블럭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2. 2003년 上半期 輸入規制 動向

가. 총괄

- 2003. 6월말 현재 우리 나라는 미국, EU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3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139건의 수입규제 중 규제중인 것은 105건이며, 조사중(최종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조사중으로 집계)은 34건임
- 국가별로는 미국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4건, 중국 17건, EU 12건, 남아공 10건, 호주 9건 순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중남미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주엘라 포함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16건, 반덤핑/상계관세 6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15건임
 - 반덤핑 규제가 전체 수입규제의 대부분(8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우리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45건, 섬유류 19건, 전기·전자 12건, 기타 17건 순

- 석유화학제품은 인도(17건), 중국(11건), 철강제품은 미국(18건), 캐나다(7건), 섬유류는 중남미(7건), 터키(4건), 전기·전자는 EU(4건), 인도(3건)에서 주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음

□ 2003년 상반기 신규 피소 건은 총 9건이며 개도국으로부터의 피소 건이 총 6건으로 전체 피소건수의 67%를 차지

[2003년도 상반기 신규 피소 현황]

| 연번 | 국 가 | 피 소 품 목 | 내 용 | 조사개시일 |
|----|-------|-----------------------------------|--------------|-----------|
| 1 | 말레이시아 | 인쇄용지 | 반덤핑 | 1. 16 |
| 2 | 미 국 | PC 강선 | 반덤핑/ 상계관세 | 1. 31 |
| 3 | 인도네시아 |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 반덤핑 | 2. 10 |
| 4 | 인도네시아 | 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 반덤핑 | 2. 10 |
| 5 | 인 도 | 염화메틸(Methylene Chloride) | 반덤핑 | 2. 19 |
| 6 | 캐나다 | 구조용 강관 | 반덤핑 | 5. 21 |
| 7 | 미 국 | 열전사 리본 | 반덤핑 | 5. 30 |
| 8 | 중 국 | 클로로포름(Chloroform) | 반덤핑 | 5. 30 |
| 9 | 인도네시아 | PSF(Polyester Staple Fibre) | 반덤핑 | 6. 6(제소일) |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2건, 철강 2건, 섬유류 1건, 기타 4건이며, 피소 형태별로는 반덤핑 8건, 반덤핑/상계관세 1건

나. 국별 동향

[미 국]

□ 2003년 6월말 총 25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5건(조사중 2건), 반덤핑/상계관세 6건(조사중 1건), 상계관세 1건(조사중), 셰이프가드 3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18건, 석유화학 3건, 전기·전자 1건, 섬유류 1건, 기타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규제일자 | 내 용 | 품 목 |
|------------|--------------|--|
| 05/23/1986 | 반덤핑 |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 |
| 01/20/1987 | 반덤핑/ 상계관세 | 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 |
| 07/10/1990 | 반덤핑 | Industrial nitrocellulose |
| 06/05/1991 | 반덤핑 |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 |
| 11/02/1992 | 반덤핑 |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
| 12/30/1992 | 반덤핑 |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
| 02/23/1993 | 반덤핑 |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
| 08/17/1993 | 상계관세 |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
| 08/19/1993 | 반덤핑 | |
| 08/11/1995 | 반덤핑 | Oil country tubular goods |
| 09/15/1998 | 반덤핑 | Stainless steel wire rod |
| 05/21/1999 | 반덤핑 |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
| 07/27/1999 | 반덤핑 |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
| 08/06/1999 | 상계관세 | |

| 규제일자 | 내 용 | 품 목 |
|------------------------|--------------|---|
| 02/10/2000 | 반덤핑/ 상계관세 | Carbon steel plate |
| 02/10/2000 | 세이프가드 | Certain Steel Rod |
| 02/10/2000 | 세이프가드 |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
| 03/20/2000 | 세이프가드 | Steel(14개 품목군) |
| 05/25/2000 | 반덤핑 | Polyester staple fiber |
| 08/14/2000 | 상계관세 | Structural steel beams |
| 08/18/2000 | 반덤핑 | |
| 05/18/2001 | 반덤핑 | Stainless steel angle |
| 09/07/2001 | 반덤핑 |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
| 03/07/2002 | 반덤핑 | Stainless steel bar |
| 01/31/2003 (조사개시) | 반덤핑/ 상계관세 |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and Strand (PC 강선) |
| 03/03/2003 (예비판정) | 반덤핑 | Polyvinyl Alcohol |
| 05/30/2003 (조사개시) | 반덤핑 | Wax / Wax Resin Transfer Ribbons (열전사 리본) |
| 06/16/2003 (상무부 판정) | 상계관세 | D-RAM |

□ 2003년 상반기에 신규 제소 당한 품목은 2건임

[2003년 상반기 對韓 신규 제소 현황]

| 품 명 | HS 코드 | 유 형 | 조사개시 | 예비판정일 |
|--------|------------------------------|---------------|----------|----------|
| PC 강선 | 7312.10.3010 7312.10.3012 | 반덤핑 / 상계관세 | '03.1.31 | '03.7.10 |
| 열전사 리본 | 3920.62 3926.90 등 | 반덤핑 | '03.5.30 | '03.7.14 |

□ 최근 WTO는 지난해 3. 30일부터 미국이 철강 14개 제품에 대해 시행해온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음

- 이번 판정은 한국, EU, 중국 등 8개국이 미국의 철강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2002년 3월에 WTO에 정식 제소한 이후 16개월만에 나온 것임
- WTO 분쟁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철강제품 수입증가와 국내 산업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을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음.
- 미국이 WTO의 이번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에는 금년 11월 경에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임.

[캐나다]

□ 2003. 6월말 현재 반덤핑 6건(조사중 1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유 형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비 고 |
|--------|-----|-----------|----------|----------|------------------------|
| 탄소강관 | 반덤핑 | '82.9.14 | '83.3.30 | '84.6.27 | '90, '95, '00년 각각 규제연장 |
| 아연도강관 | 반덤핑 | '93.9.7 | '94.3.31 | '94.7.9 | '00. 1. 20일 규제연장 |
| 철 근 | 반덤핑 | '99.6.16 | '99.9.14 | '00.1.12 | |
| 스텐레스봉강 | 반덤핑 | '98.12.3 | '99.2.18 | '99.6.18 | |
| 후 관 | 반덤핑 | '93.10.18 | '94.1.17 | '94.5.17 | |

| 품 명 | 유 형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비 고 |
|----------|-------|----------|---------|------|---------|
| 구조용강관 | 반덤핑 | '03.5.21 | - | - | |
| 철강 5개 품목 | 세이프가드 | '02.3.21 | '02.7.4 | - | 최종판정 유보 |

- 2003년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구조용 강관임
 - 동제품은 2003. 4.21일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5. 21일 조사가 개시된 상태이며, 피소업체는 세아제강, 국제강재 등 8개 업체임
 - 이외에 지난 2001년 산업 무피해 판정이 났던 아국산 냉연강관에 대해 현지 철강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재심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산업 무피해 판정을 받아, 더 이상의 재심요청은 불가능하게 됨
- 2002. 7월에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받았던 철강 5개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규제대상 품목에 미국산 제품이 4개나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보복조치를 우려,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철근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식 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캐나다는 무역에 있어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이지만, 유독 자국내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
 - 캐나다 전체 수입규제의 75%가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정책을 반증하고 있는 좋은 예
 - 이처럼 캐나다가 국내 철강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90년대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C\$49억)이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인데다,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에 따라 철강수입이 급증하면서, 캐나다 철강업체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EU]

- 2002. 6월말 현재 반덤핑 10건, 상계관세 1건(예비관정),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3건, 석유화학 3건, 전기·전자 4건, 섬유 1건, 기타 1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목 | 규제형태 | 조사개시 | 최종관정 | 비 고 |
|-------------|-------|-----------|-----------|-----------------------------|
| 글루타민산나트륨 | 반덤핑 | '88.6.6 | '90.6.30 | '99. 4월 반덤핑관세 지속부과 결정 |
| 3.5" 플로피디스크 | 반덤핑 | '92.9.18 | '94.9.10 | '99. 9월, '02. 2월 관세 지속부과 결정 |
| 칼라TV | 반덤핑 | '92.11.25 | '95.3.27 | '02.2월 반덤핑관세 지속부과 결정 |
| 칼라TV 브라운관 | 반덤핑 | '99.9월 | '00.10.20 | |
| 주철제 관연결구류 | 반덤핑 | '99.5.29 | '00.8.18 | |
| PET칩 | 반덤핑 | '99.11.6 | '00.11.30 | '03. 5월 재심 시작 |
| 전자저울 | 반덤핑 | '99.9.16 | '00.11.30 | |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 반덤핑 | '99.10.7 | '00.12.28 | |
| PET 필름 | 반덤핑 | '00.5.27 | '01.8.23 | |
| 철강제 관연결구류 | 반덤핑 | '01.6.1 | '02.8.24 | '03.5월 관세율 인하 |
| D-RAM | 상계관세 | '02.7.25 | - | '03. 4월 잠정관세 부과 하이닉스 : 33% |
| 철강제품 | 세이프가드 | '02.3월 | '02.9.27 | 관세쿼터 적용 |

주)글루타민산나트륨의 반덤핑관세 부과는 2003. 9. 30일 부 종료예정

□ 올해 상반기 중에 신규 제소된 건은 없었으며, 2건의 수입규제 조치 (조사중 포함)가 종료되었음

- '98. 2. 17일부터 스텐레스 웨스너에 대해 시행되어 오던 반덤핑 조치가 올해 2. 2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사도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 되어 1. 28일부로 종료됨

- 이 외에 지난 5. 22일 PET칩에 대한 반덤핑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철강재 관련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44%에서 20.3%로 인하 되었음

[터 키]

□ 2003. 6월말 현재 4개의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HS 코드 | 유 형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반덤핑관세율 |
|--------------|---------|-----|----------|----------|-------------|
|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 5402.43 | 반덤핑 | '98.1.27 | '99.12.6 | 7.06%~21.2% |
|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 5503.20 | 반덤핑 | '99.3.4 | '00.3.13 | 11.9%~24% |
| 폴리에스터 직조섬유사 | 5402.33 | 반덤핑 | '99.3.4 | '00. 6월 | 33.7% |
| 폴리에스터 장섬유 직물 | 5407 일부 | 반덤핑 | '99.11.1 | '02.2.15 | 3.51%~40% |

□ 터키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들은 모두 섬유류인데, 이는 우리 나라의 對터키 수출구조와 무관하지 않음

- 우리 나라의 對터키 주종 수출품목은 섬유류로서, 과거 5년간 섬유류가 전체 對터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했는데, 이처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임

□ 터키 정부는 최근 들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품목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원산지 및 제조(수출)업체 증명 강화, 자체 과표 기준 설정을 통한 언더밸류 단속 등의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폴란드]

□ 2003. 6월말 현재 아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1건의 세이프가드를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조 치 내 용 |
|----------|---------|----------|---------|---------------------------|
| 철강 8개 제품 | '02.6.8 | '02.8.19 | '03.3.8 | 관세쿼터 실시 (추가관세 : 9~15%) |

- 2002. 6월에 12개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 2월 최종 판정에서는 8개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2005. 3. 8일까지 2년간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결정
-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 철강 8개 제품은 flat hot rolled products, flat cold rolled products, flat galvanized products, organic coated flat products, other hot rolled bars, electrical sheets, seamless tubes, welded tubes 등

[멕시코]

□ 2003. 6월말 현재 2개의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유 형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조 치 내 용 |
|------------------|-----|-----------|----------|----------|----------------------|
|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 반덤핑 | '92.3.19 | '98.1.21 | '98.8.19 | '99. 7월 규제지속 결정 |
|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 | 반덤핑 | '99.12.14 | '00.10.3 | '01.6.22 | 반덤핑 관세부과 (16.03%) |

□ 금년 들어 우리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는 없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섬유류, 잡화, 신발류 등의 밀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상당부분 지체되고 있음

[아르헨티나]

□ 2003. 6월말 현재 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2건 등 총 7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섬유류 3건, 기타 2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유 형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조 치 내 용 |
|-----------------------|-----|----------|-----------|----------|----------------------|
| 평판압연제품 (두께 3mm 미만) | 반덤핑 | '01.7.19 | '02.4.30 | '03.1.8 | 반덤핑 관세부과 (60.46%) |
| 평판압연제품 (두께 3mm 이상) | 반덤핑 | '02.5.30 | '02.12.16 | '03.5.23 | 반덤핑 관세부과 (49.67%) |

| 품 명 | 유 형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조 치 내 용 |
|----------------------|-----------|----------|-----------|-----------|--------------------------------|
| 폴리에스터 염색 직물 및 나일론 | 반덤핑 | '99.6.22 | '00.1.25 | '00.6.22 | 반덤핑 관세부과 (US\$9.5/kg) |
| 폴리에스터 합성 스테인플 섬유 | 반덤핑 | '01.5.21 | '01.11.8 | '02.11.22 | 반덤핑 관세부과 (US\$0.85/kg) |
| 아세테이트 필라 멘트 염색직물 | 반덤핑 | '99.12.2 | '00.11.23 | '01.8.7 | 반덤핑 관세부과 (US\$8.73/kg) |
| 스포츠용 신발 | 세이프 가드 | '00.9.12 | - | '00.7.24 | 적용기간 ('00.7.22 ~ '03.7.21) |
| 소형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 세이프 가드 | '00.8.17 | - | '01.7.2 | 적용기간 ('01.6.22 ~ '04.6.21) |

□ 2003년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없으며, 반덤핑 최종판정이 2건 있었음

- 2001. 7월에 제소되었던 평판압연제품(두께 3mm 미만) 12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확정판정(반덤핑관세 60.46%)이 올해 1월에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평판압연제품(두께 3mm 이상)에 대해 49.67%의 반덤핑 확정판세가 부과되었음

□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올해 상반기에 우리 상품이 신규 수입규제를 받지 않았던 주 요인은 아르헨티나의 수입시장 붕괴로 對아르헨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는 작년에 경제위기 심화로 인해 태환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에 따라 환율이 폭등하면서 수입시장이 붕괴되었음
- 이러한 아르헨티나 수입시장이 붕괴의 여파로 작년 우리 나라의 對아르헨 수출은 2001년에 비해 83% 급감하였으므로, 우리 상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

[브라질]

- 2003. 6월말 현재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2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데, 모두 섬유류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HS 코드 | 유 형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조치내용 |
|---------|--------------------|-------|----------|----------|-----------------------|
| 나일론 6번사 | 5402.31 | 반덤핑 | '00.1.12 | '01.6.28 | 반덤핑관세 (5.2%~52.2%) |
| 폴리에스터직물 | 5407.61 5407.52 | 세이프가드 | '02.10월 | '03.1.27 | 수출자율규제 |

- 브라질 정부는 2002. 10월 아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직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통보해왔는데, 우리 나라는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출자율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수출자율규제는 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3년에 15,606톤이며, 2004년에는 16,855톤임
- 기존에 덤핑혐의로 제소되었던 PVC레진과 스텐레스 강관은 조사결과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음
- 브라질의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미국, 중국, EU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이는 섬유류를 제외한 우리 나라의 對브라질 수출품목이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 등이어서 브라질 국내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베네주엘라]

- 2003. 6월말 현재 신발류에 대해 1건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HS 코드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판정내용 |
|-----|---------|----------|------------|------|--------|
| 신발류 | 6402.20 | '02.9.23 | '03. 3. 20 | - | 55~78% |

- 올해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건은 없으나, 2002. 11. 1일부터 시작된 아국을 포함한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U형강, I형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지난 3. 13일 무혐의 처리됨

[이집트]

- 2003. 6월말 우리 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1건뿐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HS 코드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조 치 내 용 |
|-----|---------------------|---------|---------|-----------|----------------------|
| 타이어 | 4011.10, 4011.20 | '98. 9월 | '99.7.8 | '99.10.10 | 반덤핑 관세 (6.5%~17%) |

- 이집트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규제 조치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자국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철근, 전구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산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된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제품 등은 국내 산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음

[남아공]

- 2003. 6월말 현재 10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신규 제소되거나 규제 내역이 변동된 제품은 없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3건, 섬유류 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3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목 | 조사개시일 | 예비관정일 및 내용 | 최종관정일 및 내용 |
|--------------|-----------|--|---------------------------------|
| 승용차 타이어 | '97.1.17 | - '98.3.27 - 금호,우성 : 무혐의 - 한국 : 58.4% 잠정관세 | '98.10.1 예비관정과 동일 |
| 스텐레스 주방용기 | '97.11.20 | - '98.4.22 - 동원금속 : 무혐의 - 여타 6개사 : kg당 23.94 ~ 27.28란드 잠정관세 | '98.10.21 예비관정과 동일 |
| 아크릴 담요 | '98.4.28 | - '98.12.18 - kg당 11.5란드 잠정관세 | '99.6.18 kg당 5.76란드로 하향조정 |
| 스텐레스 용접관 | '98.7.31 | - '98.12.18 - LG금속 무혐의 - 여타업체가 수출할 경우 47.6% 잠정관세 | '99.6.18 예비관정과 동일 |
| 카본 블랙 | '98.8.21 | - '99.2.5 - 40% 잠정관세부과 | '99.9.10 예비관정과 동일 |

| 품 목 | 조사개시일 | 예비관정일 및 내용 | 최종관정일 및 내용 |
|----------------|-----------|--|---------------------------|
| 스텐레스 싱크대 | '98.9.4 | - '99.6.18 - 384.13% 잠정관세 | '99.12.17 예비관정과 동일 |
| 광케이블 | '98.10.2 | - '99.8.20 - 잠정관세 부과면제 | 2000.3.31 반덤핑관세(49.9%) |
| 과산화수소 | '99.5.28 | - '99.8.27 - 한솔화학 : 147% - 동양화학 : 167% | 2000.3.3 예비관정과 동일 |
| Suspension PVC | 2000.3.27 | - 2000.12.15 - 42.31% 잠정관세 | 2001.6.15 예비관정과 동일 |
| 연선, 로프, 케이블 | 2000.9.13 | - 2002.02.08 - 10.4% 잠정관세 | - |

[뉴질랜드]

- 2003. 6월말 현재 아국산 냉장고와 세탁기 등 2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목 | HS 코드 | 규제형태 | 최종관정 |
|-----|-----------|------|---------|
| 냉장고 | 8418.10 등 | 반덤핑 | '01. 6월 |
| 세탁기 | 8450.11 | 반덤핑 | '01. 6월 |

- 2001. 6월 이후 아국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없었으나, 올해 4월 뉴질랜드 가전 업체인 “Fisher & Paykel”이 LG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Fisher & Paykel”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세탁기에 자사 특허품인 SmartDrive 기술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농·목축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대외 경쟁력도 약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규제 조치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반덤핑 규제 7건이 전부이며, 2003년도에 신규 제소된 건은 없음

[호 주]

- 2003. 6월말 현재 총 6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3개 품목이 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총 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6건, 철강 2건, 전기·전자 1건이며, 2003년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건은 없음
 - 다만, 아국산 철강 중후판(Steel Sheet)에 대한 현지업계의 반덤핑 제소가 있었는데, 신청서류 미비로 관계당국에 의해 반려되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목 | HS 코드 | 규제형태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비 고 |
|-------------------|--------------------|------|---------|---------|--------------------------|
| EPS | 3903.11 | 반덤핑 | '92. 1 | '92. 11 | '97. 1월 재심 '02. 9월 재심 |
| Polystyrene Resin | 3903.19 3903.90 | 반덤핑 | '97. 12 | '98. 12 | |
| PVC | 3919.90 | 반덤핑 | '99. 4 | '00. 3 | |
| 동관 | 7411.10 | 반덤핑 | '00. 10 | '01. 4 | |

| 품 목 | HS 코드 | 규제형태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비 고 |
|---------|--------------------|------|---------|--------|----------------------------|
| Polyols | 3907.02 | 반덤핑 | '01. 4 | '02. 4 | |
| 열연형강 | 7216 일부 | 반덤핑 | '01. 11 | '02. 7 | |
| 세탁기 | 8450.11 8450.20 | 반덤핑 | '02. 7 | - | '02. 12월 예비판정 잠정관세 부과 중 |
| HDPE | 3901.20 | 반덤핑 | '02. 10 | - | '03. 6월 예비판정 잠정관세 부과 중 |
| LLDPE | 3901.10 | 반덤핑 | '02. 10 | - | '03. 6월 예비판정 잠정관세 부과 중 |

□ 호주는 자국산업 피해방지를 위해 주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세이프가드는 발동한 적 없음

- 2003. 6월말 현재 호주의 반덤핑 조치(조사중 포함)는 총 72건에 달하고 있는데, 주요 규제품목은 화학, 철강 및 금속, 섬유, 종이제품 등이며, 최근 들어서는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중 국]

□ 2003. 6월말 현재 우리 상품은 반덤핑 16건(조사중 9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3건, 석유화학 11건, 섬유류 1건, 기타 2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유 형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판정내용 |
|------|-----|-----------|-----------|-----------|--------|
| 신문용지 | 반덤핑 | '97.11.10 | '98. 7. 9 | '99 .6. 3 | 55~78% |

| 품 명 | 유 형 | 조사개시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판정내용 |
|-----------|-----------|-----------|-----------|-----------------|-----------------------|
| 폴리에스테르필름 | 반덤핑 | '99. 3.16 | '99.12.29 | '00. 8.25 | 13~46% |
| 스텐레스냉연강판 | 반덤핑 | '99. 6.17 | '00. 4.13 | '00.12.18 | 6~58% |
| 염화메틸렌 | 반덤핑 | '00.12.20 | '01. 8.16 | '02. 6.20 | 4~66% |
| 폴리스틸렌 | 반덤핑 | '01. 2. 9 | - | '01.12. 6 | 무혐의 |
| 라이신 | 반덤핑 | '01. 6.19 | - | '02. 9.29 | 무혐의 |
| 폴리에스터단섬유 | 반덤핑 | '01. 8. 3 | '02.10.22 | '03. 2. 3 | 2~48% |
| 폴리에스터칩 | 반덤핑 | '01. 8. 3 | '02.10.29 | '03. 2. 3 | 5~52% |
| 아크릴레이트 | 반덤핑 | '01.10.10 | '02.12. 5 | '03. 4.10 | 2~49% |
| 아트지(동판지) | 반덤핑 | '02. 2. 6 | '02.11.26 | '03. 8. 6 예정 | 5.58~71.02% (예비판정) |
| 무수프탈산(PA) | 반덤핑 | '02. 3. 6 | '03. 1. 7 | '03. 9. 6 예정 | 18~66% (예비판정) |
| 합성고무(SBR) | 반덤핑 | '02. 3.19 | '03. 4.16 | '03. 9.19 예정 | 13~46% (예비판정) |
| 냉연강판 | 반덤핑 | '02. 3.23 | '03. 5.20 | '03. 9.23 예정 | 8~55% (예비판정) |
| PVC | 반덤핑 | '02. 3.29 | '03. 5.12 | '03. 9.29 예정 | 10~115% (예비판정) |
| TDI | 반덤핑 | '02. 5.21 | '03. 6.10 | - | 6~49% (예비판정) |
| 페놀 | 반덤핑 | '02. 8. 1 | '03. 6. 9 | - | 7~144% (예비판정) |
| MDI | 반덤핑 | '02. 9.20 | - | - | - |
| 클로로포름 | 반덤핑 | '03. 5.30 | - | - | - |
| 철강 5개 품목 | 세이프 가드 | - | '02. 5.24 | '02..11. 1 | 관세쿼터 |

- 올해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우리 나라 제품은 클로로포름(Chloroform, HS 코드 : 2903.1300) 1건

[2003년 상반기 對韓 신규제소 현황]

| 품 목 | HS 코드 | 규제형태 | 제소일자 | 조사개시 | 피제소국 |
|-------|-----------|------|-----------|-----------|------------|
| 클로로포름 | 2903.1300 | 반덤핑 | 2003.5.20 | 2003.5.30 | 한국, EU, 인도 |

※ 클로로포름 : 유기화공품으로서 흡입 전신마취제, 살충제, 곰팡이 제거제, 추출용 용매, 분석시약, 공업용 유지(油脂)·합성수지·고무·알칼로이드·페니실린 등의 용제로 쓰임.

- 조사대상 기간

- 덤핑조사기간 : 2002. 1. 1일 ~ 2002. 12. 31일
- 산업피해조사기간 : 1999. 1. 1일 ~ 2002. 12. 31일

- 조사방식 : 설문, 표본, 청문회, 현장조사 등

- 조사일정 : 2003. 5. 30일 ~ 2004. 5. 30일(필요시 6개월 연장)

- 2003년 상반기 중 아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변동내역은 총 15건인 것으로 집계

- 최종판정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폴리에스터 칩, 아크릴레이트
- 예비판정 : 무수프탈산, 합성고무, 냉연강판, PVC, TDI, 페놀
- 조사기간 연장 : 동판지, 무수프탈산, 합성고무, 냉연강판, PVC
- 신규조사 : 클로로포름

- 올해 들어 2002. 11. 1일부터 냉연강판 등 철강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발동되었던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제외 품목이 발표되고 쿼터량이 증량되는 등 세이프가드 조치가 다소 완화되어 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올해 5. 24일자로 세이프가드 규제 대상 철강품목 중 냉연강판 3종, 컬러강판 2종, 전기강판 2종, 스텐레스 냉연강판 41종 규격 등 총 4개 품목 48개 품종에 대해 세이프가드 적용을 배제 하였음

- 또한, 올해 5. 16일에는 전기강판에 대한 2차년도 쿼터량을 94만톤으로 약 20만톤 증량하였음
 - 이러한 중국 당국의 움직임은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중국 내 철강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철강가격의 급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 2003. 6월 말 현재 중국은 반덤핑 23건(조사중 11건 포함), 세이프가드 1건의 등 총 24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17건에 달해 우리 나라는 중국의 제 1의 수입규제 대상국임
- 이처럼 우리 상품에 대한 규제가 빈발한 것은 중국의 공업화 급진전으로 인해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서 세계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한·중 양국 상품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3년 상반기 중 중국의 전체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에틸알콜아민(피제조국 : 일본, 미국 등 7개국), 클로로포름(피제조국 : 한국, EU 등 4개국)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2건으로 작년 동기(8건)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음
- 이처럼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신규 수입규제 조치가 감소한 요인으로는 첫째, 4월 이후 3개월간 사스 발생으로 인해 대외교역의 급속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입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 둘째, 지난 1~2년간 반덤핑 조사 착수가 급증한 까닭에 신규 수입규제보다는 기 착수 사항에 대한 후속업무가 다수 진행(예비 또는 확정 판정, 조사연장 등의 조치 14건 기록)되었기 때문이며,
 - 셋째, 최근 중국산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반덤핑으로 제소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의식하여, 기존의 공세적 통상정책을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일 본]

- 2003. 6월말 현재 우리 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유일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유 형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비 고 |
|------------|-----|----------|----------|--------------|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 반덤핑 | '01.4.23 | '02.7.27 | 덤핑마진 : 32.5% |

- 일본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수입규제 조치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임

- WTO 창설 이후 현재까지 일본이 취한 반덤핑 조사는 단 2건에 불과
- 이처럼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 산업보호나,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벧짚에 대해 검역을 강화, 수입승인 품목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일본은 자국 농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 가지, 토마토, 피망 등을 일본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동 품목들의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일본이 세이프가드 발동과 같은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 만]

- 2003. 6월말 현재 3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시멘트 1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반덤핑관세율 |
|---------------|---------|----------|-----------------|
| H Beam | '96. 7월 | '98. 12월 | 31.48% |
| 강 선 | '97. 8월 | '98. 12월 | 25.39%~42.38%% |
| 포틀랜드시멘트 및 클링거 | '01. 6월 | '02. 7월 | 110.99%~126.81% |

- 2003년 상반기중에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없었으나, 2000. 10월에 반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리되었던 아국산 PC 강연선에 대해 올해 4월 台北 고등행정법원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음
 - 동 법원은 덤핑혐의 조사 당시 조사기관이 덤핑제소 시점 전후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하지 않고 제소이후 시기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
 - 이처럼 台北 고등행정법원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아국의 對대만 PC 강연선 수출 급증(2001년 대비 26.6% 증가한 1,423만 달러 기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만 산업계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인 도]

- 2003. 6월말 현재 20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조사중 9건)를 받고 있으며, 4개 품목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17건, 전기·전자 3건, 섬유류 2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 구 분 | 품 목 | 규제내용 |
|-----------------------|---------------|--|
| 반덤핑 규제중 (11개품목) | 폴리에스터 필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3 조사개시, '00. 11 예비판정, '01. 3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0.36~0.98/kg |
| | 옥소 알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2 조사 개시, '99. 2 예비판정, '00. 7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폴란드, 러시아, 이란, 미국, EU, 사우디,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115~225/톤 |
| | 아크릴 단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9 제소, '97. 10 덤핑관세, '00. 4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미국, 태국 ○ A/D관세(한국) : US\$ 0.534/kg ○ 01.8월 재심 개시 |
| | P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9 예비판정, '98. 3 덤핑관세, '00. 5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16.07~17.04/kg ○ '02. 5월 재심 개시 |
| | 폴리스티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9 조사개시, '98. 5 예비판정, '98. 7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한국) : US\$ 31.37~40.09/kg |
| | EPM & EPD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9 조사개시, '00. 5 예비판정, '00. 9 최종 판정 ○ A/D관세(한국) : US\$ 2,445~2,461/톤 |
| | 광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7 조사개시, '99. 11 예비판정, '00. 6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US\$ 2.32~8.96/km |

| 구 분 | 품 목 | 규제내용 |
|-----------------------|---------------|---|
| 반덤핑 규제중 (11개품목) | 합성고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2 조사개시, 99. 1 예비판정, 00. 5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일본,대만,터키,프랑스,미국,독일 ○ A/D관세(한국) : US\$ 1.15~1.41/kg |
| | N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3 조사개시, 96. 12 예비판정, 97.7 최종판정, 01. 9 반덤핑 재검토(유지)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한국) : US\$ 248.35~679.10/톤 |
| | NaC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3 조사개시, 99. 10 예비판정, 00. 3 최종판정 ○ 대상국 : 한국, 미국, EU, 체코 ○ A/D관세(한국) : US\$ 1,608.16/톤 |
| | 배터리 (LLA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12 조사개시, 01. 3 예비판정 ○ 대상국 : 한국,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 A/D 잠정관세(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 US\$ 3.1928/kg - 자동차용(NMF) : US\$ 2.216~2.532/kg - 자동차용(MF) : US\$ 1.904~2.121/kg ○ 01.12월 최종 판정 |
| 잠정관세 부과중 (7개품목) | PO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8 조사 개시, 01. 11 예비판정 ○ 대상국 : 한국, 터키 ○ A/D 잠정관세(한국) : US\$ 0.358/kg |
| | PI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9 조사개시, 현재 조사중 ○ 01.12월 잠정관세 ○ 관련국 : 한국 |
| | 폴리에스터 단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1조사개시, 99. 9 예비판정, 00. 1월 최종판정(무혐의 판정), 01. 6 덤핑 재조사 ○ 02.7월~2003.1.9일 잠정관세 부과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 A/D 잠정관세(한국) : US\$1.264/kg |

| 구 분 | 품 목 | 규제내용 |
|-----------------------|--|---|
| 잠정관세 부과중 (7개품목) | 냉연 압연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HS8455.30 ○ 대상국 :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 잠정관세 : 2003.1.1일 ○ A/D관세(한국) : US\$2,838.19/톤 ○ 잠정관세 부과 기간 : 2003.1.1~2003.6.30 |
| | 소듐 아황산염 (Sodium hydro- sulphi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HS2837.11 ○ 제조자 : Association of Synthetic Fibre ○ 대상국 : 한국, 독일 ○ 잠정관세 : 2003.4.1일 ○ A/D관세(한국) : US\$1,058.866/톤 |
| |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HS2836.40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 대상국 : 한국 ○ 잠정관세 : 2003.4.30~2003.12.9일 ○ A/D관세 : 128.29/톤 |
| | 동(銅) 라미네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HS7410류 ○ 제조자 : Gujrat Perstorp Electronics Limited ○ 대상국 : 한국, 중국 등 7개국 ○ 조사개시 : 2002. 12. 24 ○ 잠정관세 : 2003. 6월(관세율 : 26.67%) |
| 반덤핑 조사중 (2개품목) | 염화메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HS2837.20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Chemplat Sammar and S.R.F Ltd. ○ 대상국 : 한국 ○ 규제형태 : 조사개시(2003.2.19) |
| | 가성소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4월 제조 ○ '01.5월~2002. 3월 조사 ○ 조만간 잠정관세 부과 예상 ○ 반덤핑 관세율 : 353.4불/톤 |

| 구분 | 품목 | 규제내용 |
|-------------------------|-----|---|
| 세이프가드 규제중 (4개 품목) | GF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7 조사개시, '01. 1 최종판정 ○ SG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1. 24~'03. 1. 23 : 20% - '03. 1. 24~'03. 7. 23 : 15% |
| | 페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2 조사개시, '99. 6 발동, '01.5 2년간 연장 ○ SG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6. 30~'02. 6. 29 : 10% - '02. 6. 30~'03. 6. 29 : 7% |
| | 아세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6 조사개시, 99. 7 발동 ○ SG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1. 27~'02. 7. 26 : SG Rate 21%와 Rs 2,250/톤 중 낮은 것 적용 - '02. 7. 27~'03. 7. 26 : SG Rate 9%와 Rs 965/톤 중 낮은 것 적용 |
| | EC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3월 조사 개시 ○ 대상업체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 적용일 : 2002.10.29 ○ SG Rate : 12% |

□ 올해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품목은 염화메틸(Methylene Chloride) 1개 품목

- 동 품목은 인도의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와 Chemplat Sammar and S.R.F Ltd.社에 의해 덤핑 혐의로 제소되어 지난 2. 19일 조사가 시작되었음

□ 인도 정부가 2005년까지 WTO에 양허한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매년 5%씩 기본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관세장벽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수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 적극 활용 추세

- 인도의 2002/03 회계연도(2002.4.1~2003.3.31)중 인도 정부의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30건으로 2001/02 회계연도의 20건에 비해 50%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

[연도별 반덤핑 신규 조사 건수]

| | | | | | | |
|---------|---------|---------|---------|---------|---------|---------|
| 연 도 | '92-'93 | '93-'94 | '94-'95 | '95-'96 | '96-'97 | '97-'98 |
| 조사건수(건) | 2 | 2 | 4 | 6 | 5 | 13 |
| 연 도 | '98-'99 | '99-'00 | '00-'01 | '01-'02 | '02-'02 | - |
| 조사건수(건) | 12 | 19 | 26 | 20 | 30 | - |

자료원 : CII

- 국별로는 중국이 전체 30건 중 절반인 15건을 차지해 제 1위의 규제 대상국이었으며, 대만과 우리 나라가 각각 6건으로 뒤를 잇고 있음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재 5건, 철강 4건, 의약품 3건 등임

[인도네시아]

- 2003. 6월말 현재 5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3건)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2건, 섬유류 1건, 제지류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목 | HS 코드 | 규제형태 | 제소일 | 진 행 상 황 |
|-------|---------|------|----------|---------|
| 무수푸틸산 | 2917.35 | 반덤핑 | '02.4.22 | 최종판정 |
| 카본블랙 | 2803.00 | 반덤핑 | '98.7.1 | 최종판정 |

| 품 목 | HS 코드 | 규제형태 | 제소일 | 진 행 상 황 |
|-----------------------------------|---------|------|----------|---------|
|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 4802.52 | 반덤핑 | '03.2.10 | 조사중 |
| 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 4810.11 | 반덤핑 | '03.2.10 | 조사중 |
| PSF | 5503.20 | 반덤핑 | '03.6.6 | 제소 접수 |

주) PSF(Polyester Staple Fiber)의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에 제소 접수된 상태여서 조만간 조사가 개시될 예정이므로 조사중으로 집계

□ 2003년 상반기 수입규제 변동내역은 신규 제소 3건, 최종 덤핑관세 부과 철회 1건 등 총 3건임

- 신규 제소된 품목은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필기 및 인쇄 용지, PSF 3개 품목이며,
- 철망간/규소망간의 경우 2002. 11. 16일 산업무역부에 의해 19%의 덤핑관세 부과 확정 판결이 났으나 재무부의 최종 판정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수입규제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덤핑관세 부과가 철회된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는 수입규제를 잘 활용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일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일부품목에 대해 덤핑혐의 조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임

[태 국]

□ 2003. 6월말 현재 4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 3건, 석유화학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명 | HS 코드 | 유 형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조 치 내 용 |
|--------------|-----------|-----|----------|----------|--------------------------|
| H 형강 | 7216.33 | 반덤핑 | '97.4.25 | '98.4.15 | 반덤핑관세 (31.65%~44.70%) |
| 무수프틸산 | 2917.35 | 반덤핑 | '02.2월 | - | |
| 열연강판 | 7008.10 등 | 반덤핑 | '02.7월 | '03.6월 | 반덤핑관세 (13.96%) |
| 스텐레스 압연강판 | 7219.32 등 | 반덤핑 | '02.11월 | '03.3월 | 반덤핑관세 (50.99%) |

□ 무수프틸산의 경우 조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 태국 정부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 외에 98. 8월 이후 H 형강에 부과되어 온 반덤핑 관세가 금년 8월중에 종료됨에 따라, 태국 업계의 반덤핑관세 연장요청에 의거 현재 재심 중에 있음

[말레이시아]

□ 2003. 6월말 현재 2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목 | 규제형태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비 고 |
|------|------|----------|---------|--------------------------------|
| 골판지 | 반덤핑 | '97.7.25 | '98.4.3 | 17.3%~35.4%의 반덤핑 관세 부과 |
| 인쇄용지 | 반덤핑 | '03.1.16 | - | '03.5.29 예비판정 (마진율 : 8~43%) |

- 2003년 상반기중에 신규 제조된 제품은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인쇄용지(HS코드 : 4801.00)임
 -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말레이시아 인쇄용지 산업협회의 제소에 의해 올해 1. 1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 5. 16일 예비판정 결과 덤핑 마진율이 8~43%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됨
- 말레이시아는 자동차와 일부 섬유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입 의존형 구조를 띄고 있어, 수입규제 조치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연간 반덤핑이나 보조금 조사건수는 평균 3건 전후에 머물고 있음

다. 최근의 對韓 수입규제 특기사항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美, EU의 통상공세 강화

- 최근 우리 나라에 대한 수입규제의 특기사항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 및 금융산업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 조치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비쳐지면서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임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EU의 잇따른 상계관세 부과이며, 이 외에도 조선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EU와의 통상마찰, 제지업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문제 등이 있음
 - 이러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통상마찰은 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합의하에 추진되었던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조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WTO와 IMF라는 경제규범 체제간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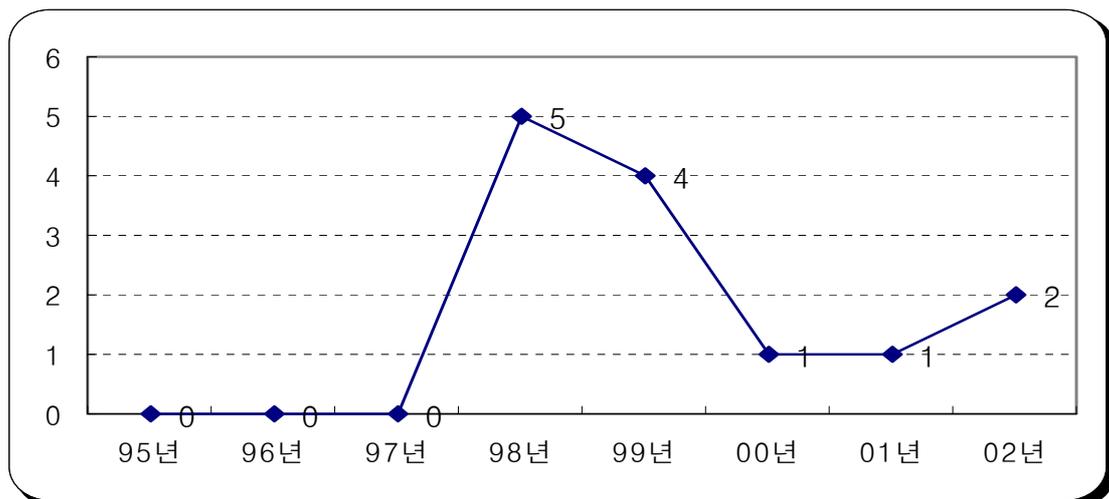
□ 이처럼 최근 들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보조금 논란의 핵심은 우리 정부의 금융기관 지배 문제와 보조금 지급의 특정성 여부로 요약될 수 있음

- 정부의 금융기관 지배문제의 경우,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결과,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커지면서 일부 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 또한, OECD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세제지원이나,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출과 관련이 없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등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조치가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

[우리 나라의 상계관세 피소 추이]



자료원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주) 상계관세 조사개시 기준

[D-RAM 반도체]

- 美 상무부는 지난해 11.21일 마이크론社의 제소에 따라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올해 4월의 예비판정을 거쳐 지난 6. 17일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
 - 美 상무부는 지난 최종판정에서 하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해 44.71%의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소마진(0.04%)으로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예비판정 이후 정부와 업계의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예비판정 결과(57.37%)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아직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작년 12월에 ITC가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어, 美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美 상무부의 이번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조세감면 및 R&D 지원 등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임
 - 美 상무부는 채권단의 하이닉스 구조조정 조치가 채권단의 자율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점과 조세감면 및 R&D 지원이 반도체 기업에게만 수혜된 특정성을 가진 금지보조금 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가 자율적, 상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정부의 은행지분 소유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 조세감면 및 R&D 지원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특정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대응논리를 펼쳐왔음

- 미국에 이어 EU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고 있음
 - EU 집행위는 지난 4. 24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33%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미소 마진(0.92%)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 EU 집행위는 예비판정에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채무 재조정 등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EU 집행위는 산업은행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적기관이며, 동 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제공하지 않았을 특혜적 행위라는 점과 2001. 10월의 채무재조정이 상업적 판단 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실질적인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최근 EU 집행위는 하이닉스에 대해 3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마련했으며,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경에 최종 결정을 나올 예정임
 - EU 15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13개국이 3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어 34%의 상계관세 부과가 확실시되고 있음

[한-EU 조선분쟁]

- 올해 6. 11일 EU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한-EU 조선분쟁에 대한 패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EU는 '99년에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며, 2002년 10. 21일 WTO에 공식 제소하였으며, 이후 양국간에 세 차례의 양자협회가 있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음

- EU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선수금환급보증, 제작금융과 한라중공업, 대우중공업, 대동조선에 대한 부채만기연장,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의 구조조정 조치가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작업은 IMF의 권고와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정부의 보조금지급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음
- EU의 패널설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되는 EU의 조선보조금을 WTO에 맞 제소 할 방침임
 - EU는 2000년 말까지 조선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작년 6월에 컨테이너선, 석유/화학제품선 등 3대 선종에 대해 계약가액의 6%까지 정부보조금을 재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제지 업계]

- 美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200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수출보조금 분야에서 제지업계에 대한 저리금융 및 세제특혜 문제를 지적하였음
 - 주요 내용은 신호제지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6,300억원 출자전환, 한국제지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계성제지의 법정관리기간 중 정부의 보호 등이 정부의 실질적이고 특정성 있는 보조금지급이라는 것임
 - 현재, 美 임업·제지협회가 이 문제를 조사중에 있으며,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업계와 함께 향후 조치를 강구하겠다 밝히고 있음

3. 2003년 下半年 輸入規制 展望

가. 총괄

- 올해 세계경제는 이라크戰의 조기 종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완화, 국제유가 안정,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미국 경제는 현재 금리가 45년이래 최저 수준인 1%까지 하락하는 등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며,
 - 일본, EU 등도 미국의 경제회복이 변수이긴 하겠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들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 이하로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도국의 물가상승률도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임
 - 이처럼 낮은 물가상승률이 수요부족 상황에서 2% 이하의 물가상승률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2001년 하반기의 2.8%에서 최근 1.7%로 하락하여 1966년 이후 최저 수준에 와있으며, 유로지역의 경우도 최근 1년 동안 근원인플레이션이 2.6%에서 1.7%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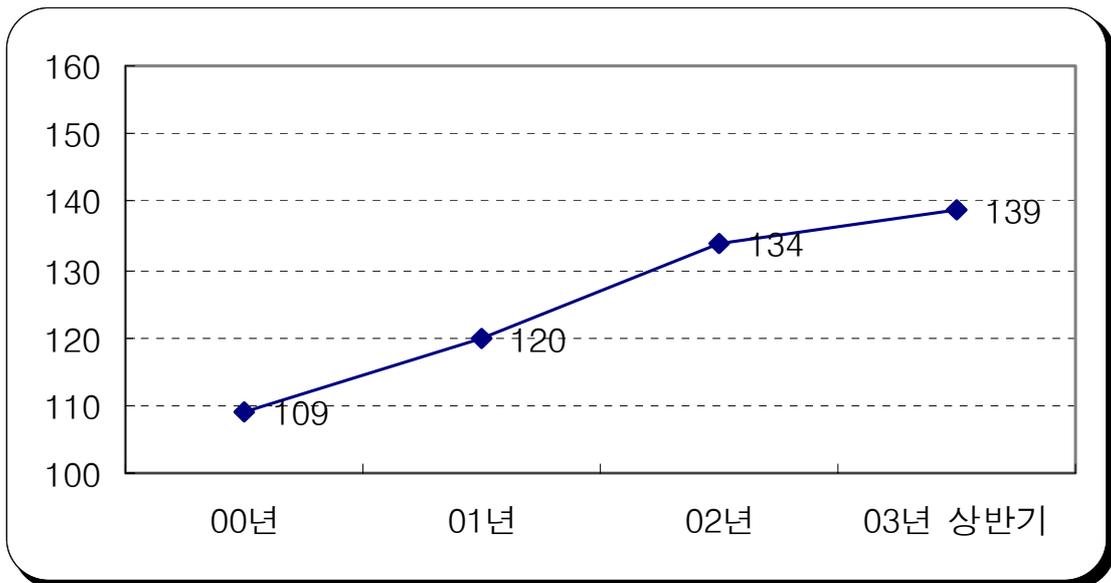
□ 이처럼 디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각국에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최근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주로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에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같은 디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될 경우, 각국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산업에 대해 시장 원리에 의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보다는 실업정책 차원에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들어서는 미국, EU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발동국 외에도 중국,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주요 개도국들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는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 2003년 6월말 현재 對韓 수입규제 건수가 139건으로 2002년 말의 134건에 비해 5건 증가하는 등,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꾸준히 강화되어 오고 있음

[연도별 對韓 수입규제 추이]



- 올 하반기에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디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섬유, IT 산업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수입규제가 강화되어, 올해 對韓 수입 규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美, EU의 하이닉스 D-RAM 반도체 상계관세 조사 최종판정

- 2003년 하반기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것을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부과 최종판정 여부임
 - 올해 들어 美 상무부는 하이닉스의 D-RAM 반도체에 대해 3. 31일 예비판정에서 57.37%의 고율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6. 17일의 최종판정에서도 44.71%의 높은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
 - 아직 美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피해판정이 남아있지만, 상무부의 판정 결과가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 전망
 -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지난 4. 24일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33%의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8월말로 예정된 최종판정에서도 예비판정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전망
- 올해 하반기에 미국과 EU에서 하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한 최종 상계관세 부과 판정이 나올 경우, 우리의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
 - 2002년 우리의 對美, 對EU D-RAM 반도체 수출액은 총 3,208백만 달러로 전체 D-RAM 반도체 수출(5,968백만 달러)의 약 54%에 해당하며, 전체 반도체 수출(16,631백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3%에 이르고 있음

- 여기에, 우리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인 점을 감안하며, D-RAM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 관세 부과가 최종 결정되면 우리 전체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여기에 최근 대만도 하이닉스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EU에서 막힌 D-RAM 반도체 수출선을 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려는 전략도 차질 전망
- 하이닉스를 둘러싼 보조금 논쟁은 향후 우리 나라와 미국, EU 등과의 통상마찰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향후 전개양상이 주목됨
-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과 EU의 하이닉스 최종판정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불공정한 판정이 나올 경우, WTO에 공식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음

美 철강세이프가드 WTO 협정위반 판결

- WTO는 최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 협정위반이라는 최종 판정결과 발표
- WTO 분쟁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철강제품 수입증가와 국내 산업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을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힘
- 조만간 미국의 상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소판정에서도 미국이 패소할 경우, 우리의 對美 철강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미국의 상소 후 올해 11월 경에 최종 판정이 나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철회될 경우,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감소하고 있는 우리의 對美 철강 수출은 철강경기가 변수이긴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세이프가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對美 철강제품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 2001년 | 2002년 | 2003. 5월 |
|-----|-------|-------|----------|
| 수출액 | 1,155 | 910 | 349 |

자료원 : KOTIS, 한국무역통계

주) 철강제품은 MTI 코드 61 기준

EU의 환경규제 강화, 간접적인 수입규제 수단화 우려

- 전통적으로 통상정책에서 환경보호를 중시해온 EU가 최근 들어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우리 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EU는 이미 지난해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을 의무화한 폐가전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정식 발효하게 되며, 2006년부터는 납, 수은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유해물질 사용금지 지침』이 시행되며, 2007년부터는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후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을 재사용 해야 하는 등 환경규제 조치가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 EU의 환경규제 강화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 기업에게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처럼 환경관련 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못한 개도국에게는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나. 주요국별 전망

[미 국]

□ 최근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여건, 정치적 상황, 기업전략 등의 변수로 오히려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금년 중반 이후 경제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기업의 실적 악화, 실업 증가가 지속될 경우 미 업계 및 정부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기 위해서 부시는 민주당 입김이 강한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회복이 2003년 중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각 주별 단체의 표심 회복을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남발할 가능성이 농후함
- 최근 들어 아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 업계 제소행위는 침체를 거듭 한 IT 산업의 상호 견제전략으로 풀이되는데, IT산업의 과잉설비가 빨리 해소되지 않는 한 IT부문에서 수입규제 움직임은 강화되어질 것으로 보임

□ 품목별로는 2003년에 특별히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으나 미 섬유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섬유쿼터가 완전 해제되는 2005년부터는 수입규제 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

- 철강의 경우 최근 철강세이프가드가 WTO 협정 위배판정을 받아 향후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으며,
- 자동차의 경우, 양국간 무역역조가 심하기는 하나, 美 자동차 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우리 나라 시장개방인 점과 현대자동차의 알라바마

생산기지 구축 등은 美 업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공세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규제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

[EU]

□ 금년 하반기에도 환경문제가 EU 통상정책의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제고로 무역/통상조치 제.개정 과정에서 환경적 고려가 의무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

□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상품은 EU로부터 여전히 수입규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반덤핑이나 수량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수입규제 보다는 안전이나 환경보호, 위생을 이유로 한 조치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들이 주된 형태가 될 것임

- 폐가전 지침이 사실상 확정되어 제조업체에 무료수거 및 일정수준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
- 모터사이클 및 3륜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과 전자오븐과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규정 강화
- 환경마크인 에코라벨도 계속 확대 추세 : 현재 소형 가정용 전기 기기, 장갑, 완구 및 게임 등 무려 33개 품목군에 대해 에코라벨 기준 제정가능성을 조사중

□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제외하고는 2002년에 이어 2003년 역시 EU의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히 수입규제 움직임이 있는 산업/품목도 없음

- 유럽 산업계가 유럽 경기회복 둔화로 어려움에 처해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비 유럽국가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대한수입 규제 압력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중 국]

- 하반기에는 사상 유례없었던 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내수진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대외적으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맞대응보다는 WTO 규범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대응으로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가급적 회피하려할 것으로 보여 對韓 수입규제도 완화될 전망
-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 지난 1~2년간 발생한 다수의 반덤핑 조사품목의 후속조치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올해 하반기에 우리 나라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중국내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망됨
- 중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에 13,073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2% 증가한 83.83억 달러를 기록, 양국간 무역마찰 가능성 고조 추세
- 또한, 하반기 들어 아국산 광섬유(HS 코드 : 9001.10)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8~9월에 동판지, 무수프탈산 등 5개 덤핑제소 품목에 대한 최종 판정이 집중되어 있어 업계의 관심이 요망됨

- 하반기에 신규 수입 규제가 예상되는 분야는 화공, 플라스틱 분야 정도이며, 다른 분야는 규제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철강은 중국내 수급불균형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품목을 발표하는 등 규제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제지류의 경우도 최근 對中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수입규제 가능성은 크지 않음

[인 도]

-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WTO와의 양허관세 인하 약속 등 요인으로 수입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인도의 2002/03년 회계연도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77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2003년에도 수출이 14% 증가에 그치는 반면 수입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가 한층 심화될 전망
 - 또한, 인도는 WTO와의 관세양허 협정에 따라 2005년까지 기본 관세율을 매년 5%씩 인하하고 있어 수입규제에 대한 인도산업계의 요구도 늘어날 전망
- 금년 하반기에 수입규제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는 화학, 철강, 직물류 등임
 - 이들 제품은 우리의 對인도 주력 수출품목인데, 최근 인도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산업계에서 수입규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현재 조사중인 염화 메틸의 경우 對인도 수출이 2002년에 비해 500% 급증한 1,955천 달러를 기록, 우리의 소나기식 수출이 규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남아공]

- 남아공은 인근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블록 형성, 미국, EU 등과의 FTA체결을 목표로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수입규제 추세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
 - 그러나, 최근 란드화가 강세에 따라 남아공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및 동남아산 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 급증으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가 중국 및 동남아산 저가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중남미]

- 중남미의 경우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시장이 붕괴되는 등 수입수요가 워낙 저조해, 하반기에도 수입규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국내 기업들의 연쇄도산이 발생할 경우에, 수입규제 조치를 남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수출이 워낙 급감하여 별다른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으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억제 정책을 펼칠 경우, 수입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음
 - 브라질 역시 국내 경기 위축으로 수입수요가 약세이고,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별다른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을 전망이나, 브라질 신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국내산업 보호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국내 산업계가 수출급증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요청할 경우,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일 본]

- 일본의 경우 특별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세이프가드 관련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하면서, 긴급 정보수집 체제(레벨 2)과 통상 정보수집체제(레벨 1) 대상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망됨
 - 레벨 2의 대상품목인 토마토, 피망, 미역이 수입 급증에 의해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레벨 1의 대상품목 중 우리 나라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가지, 설탕가공품, 건조 표고버섯이 포함되어 있어, 레벨 2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음

[호 주]

- 호주는 최근 들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품목(자동차, 섬유, 의류, 신발류 등)에 대한 고관세 정책과 함께 반덤핑 규제를 거침없이 발동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 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도 갈수록 강화될 전망
 - 특히, 최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호주 달러의 급격한 평가절상으로 인해 호주 제조업체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가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첨부

<국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3년 6월말 현재)

| 국 가 | 반덤핑 | 상계관세 | 반덤핑/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합 계 |
|-------|---------|------|--------------|-------|---------|
| 미 국 | 15(2) | 1(1) | 6(1) | 3 | 25(4) |
| 캐나다 | 6(1) | | | 1 | 7(1) |
| EU | 10 | 1(1) | | 1 | 12(1) |
| 터 키 | 4 | | | | 4 |
| 폴란드 | | | | 1 | 1 |
| 멕시코 | 2 | | | | 2 |
| 아르헨티나 | 5 | | | 2 | 7 |
| 브라질 | 1 | | | 1 | 2 |
| 베네주엘라 | | | | 1(1) | 1(1) |
| 이집트 | 1 | | | | 1 |
| 남아공 | 10(1) | | | | 10(1) |
| 뉴질랜드 | 2 | | | | 2 |
| 호 주 | 9(3) | | | | 9(3) |
| 중 국 | 16(9) | | | 1 | 17(9) |
| 일 본 | 1 | | | | 1 |
| 대 만 | 3 | | | | 3 |
| 인 도 | 20(9) | | | 4 | 24(9) |
| 인도네시아 | 5(3) | | | | 5(3) |
| 태 국 | 4(1) | | | | 4(1) |
| 말레이시아 | 2(1) | | | | (2)1 |
| 합 계 | 116(30) | 2(2) | 6(1) | 15(1) | 139(34) |

주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3년 6월말 현재)

| 국 가 | 철강 | 석유화학 | 섬유류 | 전기전자 | 기 타 | 합 계 |
|-------|-----------|-----------|-----------|-----------|-----------|------------|
| 미 국 | 18 | 3 | 1 | 1 | 2 | 25 |
| 캐나다 | 7 | | | | | 7 |
| EU | 3 | 3 | 1 | 4 | 1 | 12 |
| 터 키 | | | 4 | | | 4 |
| 폴란드 | 1 | | | | | 1 |
| 멕시코 | | | 2 | | | 2 |
| 아르헨티나 | 2 | | 3 | | 2 | 7 |
| 브라질 | | | 2 | | | 2 |
| 베네주엘라 | | | | | 1 | 1 |
| 이집트 | | | | | 1 | 1 |
| 남아공 | 2 | 3 | 1 | 1 | 3 | 10 |
| 뉴질랜드 | | | | 2 | | 2 |
| 호 주 | 2 | 6 | | 1 | | 9 |
| 중 국 | 3 | 11 | 1 | | 2 | 17 |
| 일 본 | | | 1 | | | 1 |
| 대 만 | 2 | | | | 1 | 3 |
| 인 도 | 2 | 17 | 2 | 3 | | 24 |
| 인도네시아 | | 2 | 1 | | 2 | 5 |
| 태 국 | 3 | 1 | | | | 4 |
| 말레이시아 | | | | | 2 | 2 |
| 합 계 | 45 | 46 | 19 | 12 | 17 | 139 |